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주 의 요 구

제 목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보령시

훈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보령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5. 1. 2.부터 2016. 6. 30.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과에서 ○○관리어업 육성사업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령시 관 내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총 25개소 2,2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래 [표] 와 같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연도	공동체명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370,000	645,000	516,000	209,000	
2015	○○○	100,000	50,000	40,000	10,000	
	○○	50,000	25,000	20,000	5,000	
	○○○	40,000	20,000	16,000	4,000	
2016	○○○	1,080,000	500,000	400,000	180,000	명시이월
2017	○○○	100,000	50,000	40,000	10,000	추진중

1. 사업계획서 심의자료 적성 부적정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수부 훈령)(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자체 규약에 의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어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시·도 또는 시·군)는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서가 육성사업비에 의한 사업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육성사업비는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사료자정시설, 공동판매장 등 기타 자원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선어업 공동체에 한해 친환경어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가 육성사업비에 의한 사업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보완을 하여야 한다.

위 관서에서는 201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대상으로 선정된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2015. 9. 8.)하였으며, 이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친환경어구(쇠추를 사용한 자망어구¹)를 구매하겠다

고는 사업계획서를 제출(2015. 8. 31.)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어구 구입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요구하도록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나, 친환경 그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2015. 9. 2. 서면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전용통장 사용 감독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2016년 이월사업 보조사업자인 ○○○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부터 2017. 3. 23. 접수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2017. 3. 24. 발송한 교부 결정 공문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인 ○○○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세부사업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전용통장을 개설·운용으로 보조금 사용의 용도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대출금 이자 지출, 통신요금 지출, 기타 수입 등의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친환경어구)의 인증을 받지 못함

교부받고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령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심의 철저, 전용통장 사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